
2013 희망리본 전국사업 추진계획(안)

2012. 1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목 차 |||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II. 추진 현황 및 성과	3
1. 추진 현황	3
2. 추진 성과	4
3. 개선 사항	6
III. 희망리본 전국사업 추진계획(안)	7
1. 참여자 모집 및 선정	9
2. 서비스 내용	11
3.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12
4. 지원방식 효율화	14
5. 운영·관리방식 효율화	15
IV.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16
1. '중앙희망리본본부' 설치·운영	16
2. 모니터링·평가 실시	16
3. 교육훈련 및 홍보·컨설팅 지원	17
V. 추진계획·일정	19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자활사업을 제도화
 - 취업빈곤층 자립지원 부재, 단절적 자활 프로그램 운영, 폐쇄적 자활인프라 활용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다소 부진
 - * 자활성공률 : ('07) 14.0%→('08) 15.0%→('09) 16.9%→('10) 19.7%→('11) 21.8%
 - ** 탈수급률 : ('07) 6.3%→('08) 6.7%→('09) 7.7%→('10) 9.0%→('11) 10.0%
-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자활경로의 다각화,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자활인프라 효율화 등을 위한 새로운 자활프로그램 모색
 - '09년부터 맞춤형 복지-고용 사례관리를 통한 취·창업지원 자활 시범사업으로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 실시
 - 성과중심 자활사업 희망리본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및 사업성과에 따른 참여기관 차등지원 체계 도입
- 시범사업 기간 기존 자활근로사업보다 우수한 취·창업 성과를 보인 희망리본 사업 성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공유할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 및 전국적으로 형평성·일관성있는 사업실시 등을 위하여 '13년도 희망리본 사업의 전국사업 추진
 - '13년도 희망리본 전국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여기관 성과급·전달 체계 개선 및 타 자활사업 연계 방안 등 사업내용 검토 필요

2 추진 경과

- **(‘08년 사전준비단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외 선진 사례수집 및 자활사업 선진화 프로젝트 연구용역 실시
 -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자활사업 민관협력 성과체계 발전 방향 파악, 시사점 도출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 * ‘저소득층 자활지원분야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08)
 - 기존 자활사업과 비용편익(B/C)분석,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과중심형 자활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분석
 - * ‘사회서비스 인프라확충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지역사회자활지원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분석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갈렘에이비씨, 2008)

- **(‘09~’12년 시범사업 단계)** 희망리본 시범사업 대상자, 참여지역 연차별 단계적 확대 실시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 ‘09년 복지-고용연계 프로젝트로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형 희망리본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대상자 및 참여지역 연차적 확대
 - * ’09년 2천명, 2개 지역 → ’10년 3.2천명, 4개 지역 → ’11년, ’12년 4천명, 7개 지역
 - 희망리본 시범사업 기간 중앙자활센터, 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 희망리본 사업의 효율화 모색

- **(‘13년 전국사업 준비단계)**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 실시, 타 자활사업 연계·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전국사업 방안 마련 추진
 -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양 사업 참여자 및 사업내용 연계·조정(총리실, 12.6월)
 - 희망리본 프로젝트 전달체계·성과급체계 개편 및 기존 자활근로사업 연계 등을 통한 희망리본 전국사업 방안 마련 추진
 - * ‘희망리본 시범사업 평가 및 전국사업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 (한국조세연구원, ’12.12)

II

추진 현황 및 성과

1 추진 현황

① (참여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대상 실시

- 조건부 수급자만이 아니라 자활의지·역량이 부족하거나 가구여건이 곤란한 일반 수급가구도 희망리본 참여

[희망리본 참여자 현황(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차상위자	계
	일반 수급	자활특례	조건부 수급	소 계		
'09년	398(19.9)	12(0.6)	1,137(56.9)	1,547(77.3)	453(22.7)	2,000
'10년	982(30.1)	25(0.8)	1,592(48.8)	2,599(79.7)	661(20.3)	3,261
'11년	1,882(43.0)	42(1.0)	1,594(37.4)	3,518(80.4)	858(19.6)	4,376
'12년	1,477(35.9)	51(1.2)	1,964(47.7)	3,492(84.8)	624(15.2)	4,116

② (참여기관) 영리·비영리법인 또는 컨소시엄 공모 방식 도입

- 광역 단위에서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 광역자활센터 미정착·미설치지역은 영리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수행

[희망리본 참여인원·참여기관 현황(단위: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참여기관
부산	1,000	1,000	1,000	1,000	광역자활센터 (시 직영방식)
경기	1,000	1,000	1,000	1,000	광역자활센터
인천	-	600	600	600	광역자활센터 (시 직영방식)
전북	-	600	600	600	광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컨소시엄)
대구	-	-	300	300	광역자활센터
강원	-	-	300	300	광역자활센터
광주	-	-	200	200	민간영리기관

③ (지원방식) 사업실적에 따라 성과관리형의 예산지원

- (참여기관) 참여자 1인당 참여기관 기본급 + 성과급 예산지원
- (평균지원) 166만원, (최대지원) 430만원

[참여기관 기본급 및 성과급 현황(단위: 만원)]

구분	최대 지원금	기본급	취 · 창업 성과급							탈수급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09~'10	430	150	85	-	-	-	-	85	-	110
'11	430	150	55	25	25	25	25	25	-	100
'12	430	150	50	-	50	-	-	40	40	100

- (참여자) 실비 60만원 지원
- (용도) 사업 기간 중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연 6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자에게 지급
* 희망리본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활용 연계('12년)

2 추진 성과

- ① (참여자 자활지원) 참여자 확대, 높은 취·창업, 탈수급 성과 및 대규모기업 다수 취업 등 희망리본 사업의 양질의 성과 지속
- (자활성공) 기존 자활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취·창업률을 보이며, 취·창업률 '09년 31.8% → '11년 52.7%, 탈수급률 '09년 9.1% → '11년 18.9%으로 자활성공률 지속 향상

[참여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 사업성과(단위: 명, %)]

구분	대상인원	취 · 창업(1단계)	6개월 취업유지(2단계)	탈수급(3단계)
'09년	2,000	636 (31.8)	329 (51.7)	181 (9.1)
'10년	3,261	1,427 (44.6)	844 (59.1)	592 (18.5)
'11년	4,376	2,106 (52.7)	1,263 (60.0)	757 (18.9)

* '11년 사업성과는 '12년 7월 기준

○ **(취업소요기간)** 근로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집중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여건 성숙 등에 따라 '09년 151.9일 → '10년 79.7일로 취업소요기간 단축

○ **(취업의 질)** 희망리본 참여 이후 첫 일자리를 대규모 기업에 취업한 자는 '09년 42.3%, '10년 33.7%로 취업의 질도 우수한 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고용보험 DB 기준 대규모기업 취업자 / 전체 취업자(단위: 명, %)]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계
'09년	271 (38.6) / 702	159 (50.6) / 314	430 (42.3) / 1,016
'10년	381 (31.8) / 1,200	150 (40.0) / 375	531 (33.7) / 1,575

○ **(사례관리 강화)** 중도탈락 최소화*로 지속적 사례관리 체계 마련 및 참여기관의 대상자 인위적 선별(Creaming) 방지

* (중도탈락자) '09년 230명(11.5%), '10년 116명(3.6%)

② **(자활프로그램 다각화)** 자활근로사업과 함께 희망리본을 정식적인 자활경로로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택의 폭 확대

○ 자활근로사업은 창업 희망자, 희망리본은 취업지원 필요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자활경로 제공

③ **(자활인프라 다양화)** 지역자활센터 위주의 한정된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자활인프라 확보

○ 민간기관의 자활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가능성 검증 및 참여기관간 선의의 경쟁으로 사업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④ **(종사자 처우개선)** 희망리본 종사자 인건비를 타 사회복지시설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는 등 자활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주도

- 희망리본 사례관리자 평균급여('11년, 1,903천원)는 지역자활센터 2~3급, 사회복지시설 6급 수준으로 자활현장의 비전 제시

* 사회복지사 평균 임금(2,223만원/년), '11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3 개선 사항

- ① (성과목표 조정)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되, 형식적 취업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과 질 좋은 고용 유도를 위해 목표 일부 조정
- 시범사업 취업률은 43% 수준으로 당초 목표(24.7%)보다 높았으나, 취업유지율 56.4%로 당초 목표(70%)보다 저조

[희망리본 시범사업 목표 · 성과 및 '13년 예산 반영시 조정]

구분	시범사업('09년~'11년)		'13년 전국사업 목표	
	목표	성과(A)	예산반영(1차)	성과목표*(2차)
취업률	24.7%	43%	30%(△13%p)	45%(2%p)
6개월 취업유지율(취업자 대비)	70%	56.4%	70%(13.6%p)	70%(13.6%p)
탈수급률	10%	15.5%	13.8%(△1.7%p)	16%(0.5%p)

* '13년 성과목표는 시범사업기간('09년~'11년) 평균성과 대비 목표

- ② (성과체계 개선) 취업난이도의 성과계약 반영, 높은 기본급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전략적 행위 방지 및 성과체계 강화
-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급이 과다*하고, 참여자의 취업난이도를 반영하지 않은 성과체제로 전략적 행위 발생 우려
- * 서비스 대상자 1인당 지급비용이 평균 2백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비중이 70% 근접
- ③ (사후관리 체계화) 희망리본사업 · 참여자 · 서비스 ·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지자체 - 참여기관 - 중앙자활센터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성과급 예탁 · 지급(중앙자활센터), 모니터링(조세연구원) 등을 전문기관 분산 추진, 평가 및 교육 · 컨설팅기능 미약

III

희망리본 전국사업화 추진계획(안)

비 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취·창업 지원으로 자립·자활실현

목 표

취업률 : 45%, 6개월 취업유지율 : 70%, 탈수급률 16%

추진 전략

- ◇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강화
- ◇ (성과중심형 자활사업) 단순 재정 투입 → 성과기반 예산지원 (Outcome Funding)으로 재정성과 극대화
- ◇ (자활인프라 개방) 획일적 지역자활센터 → 자활공급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 모델 발굴

구분	기존 자활사업	희망리본 본 사업
참여자	조건부 수급자 위주	취업 희망 수급자, 차상위자
프로그램	창업 중심형 자활근로	취업 강화형 자활사업
서비스	공급자 관리형 서비스	참여자 맞춤형 사례관리
인프라	지역자활센터 폐쇄형	민간공급기관 개방형
지원방식	일률적 운영비 지원	목표지 가속모델 성과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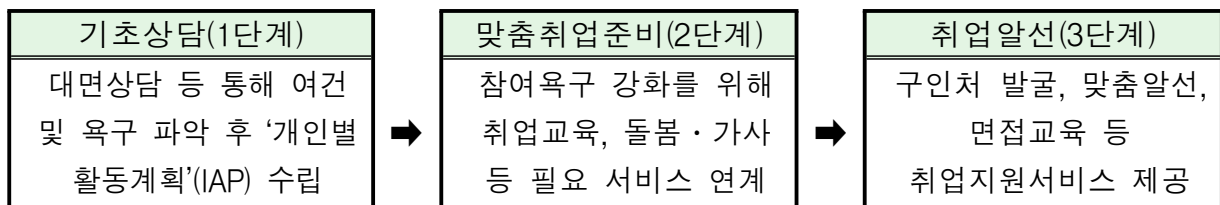
◇ 희망리본 전국사업 개요 ◇

- **(의의)**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 성과예산 지원
 -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자활에 필요한 사업) 및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 **(참여자)** 전국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10천명 지원
 - 조건부 수급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유예·제외자, 취업 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은 집중서비스지원 참여대상으로 선정
 - * (소요예산) '12년 9,022백만원(4천명), '13년 22,282백만원(10천명)

- **(서비스내용)** 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3단계 서비스 지원
 -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 근로역량 제고 및 근로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희망리본 사업 서비스 내용]



- **(인프라)** 공개경쟁 참여, 2+1년 일몰제 적용
 - (공모) 시·도 또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한 법인 공모를 원칙
 - (계약) 광역지자체, 참여기관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사업평가 후 1년 계약 연장
- **(사후관리)** 중앙 단위 '중앙희망리본본부' 설치·운영을 통한 희망리본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컨설팅 체계 구축

1 참여자 모집 및 선정

① 참여자 모집

○ (참여인원 및 시기) 총 10천명 연중 상시 모집

* 희망리본 재참여는 2년간 제한('11, '12년 시범사업 참여자 참여불가)

○ (지자체 배분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자 수, 취업가능 사업장 현황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인원 배분

* 희망리본 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12.5월, 9월)

[희망리본 지자체 배분인원]

시·도	참여인원(명)	시·도	참여인원(명)	시·도	참여인원(명)
계	10,000	대전	300(신규)	충남	300(신규)
서울	2,000(신규)	울산	100(신규)	전북	700(기존)
부산	1,100(기존)	세종	-	전남	400(신규)
대구	300(기존)	경기	2,150(기존)	경북	300(신규)
인천	600(기존)	강원	600(기존)	경남	300(신규)
광주	400(기존)	충북	300(신규)	제주	150(신규)

②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 (자활역량평가표 적용) 자활역량평가표 항목·배점(120 → 100점)을 개선*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

- (연령·건강·직업이력) 18~64세 연령구간 세분화(3 → 4단계), 건강상태, 직업이력 총점 조정(25 → 20점)

- (개인·가구의 자립환경) 참여자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인지 반영하기 위해 구직욕구 및 가구여건 항목 신설

* 총리실 조정결과('12.6월), 고용부 협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개선사항으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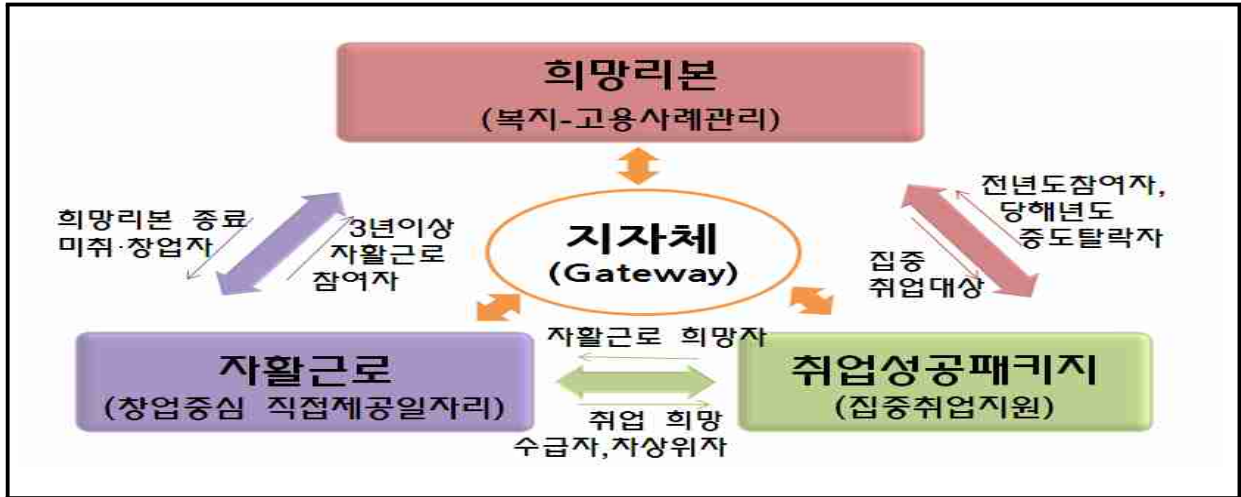
[자활역량평가 점수 개선(안)]

'12년 취업적성평가 기준				'13년 개편안			
평가항목 (120)		구 간	점 수	평가항목 (100)		구 간	점 수
연령 (30)	18~35세		30	연령 (30)	18~30세		30
	36~55세		20		31~43세		20
	56세 이상		10		44~55세		10
			56세 이상		5		
건강상태 (25)	양호		25	건강상태 (20)	양호		20
	보통		15		보통		10
	보통이하		5		보통이하		5
직업이력 (25)	상		25	직업이력(20)	상		20
	중		15		중		10
	하		5		하		5
재량점수(20)		20		구직욕구 (10)	상		10
가 점 사 항 (20)	1년내 직업경험	있음	10		중		7
		없음	0		하		5
	3년내 고용 프로그램 참여	있음	10	가구여건 (10)	상		10
		없음	0		중		7
					하		5
				재량점수(10)		10	

③ 참여자 배치·연계('12.6월 총리실 조정결과 반영)

- (참여자 배치) 자활역량평가 점수 70점 미만 수급자 참여, 70점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고용부 자활프로그램 우선 배치
 - 자활역량평가 점수 70점 미만 수급자 중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지원이 가능하거나, 우선 필요한 대상은 자활근로보다 희망리본 참여 유도
- (참여자 연계) 자활근로 장기체류자,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자활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자활사업과 연계 강화
 - (자활근로) 자활근로 3년 이상 참여자는 희망리본 사업으로 안내하고, 희망리본 사업 이후에는 Gateway 단계에서 경로 재설정
- * '13년부터 실시 예정인 자활근로 연속참여 기간 제한과 연계·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하거나 종료에 따라 재참여(2년간)가 불가능한 대상은 희망리본 사업으로 안내

[희망리본-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 연계도]



2 서비스 내용

□ 사례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 맞춤형 일자리 제공

○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가사·돌봄·간병 등)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실질적 '취업애로요인' 제거

○ (맞춤형 일자리) 희망리본 사례관리자 1인당 40~50명 내외의 참여자를 밀착 사례관리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연계

* (서비스 제공기간) 1년으로 하되, 집중지원 9개월 및 사후관리 3개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안)]

	의뢰	진단 및 개입	경제 활동 이전 지원	경제 활동지원	평가
사례 관리 서비스	(대상자) 시군구 의뢰	① 진단 ② 서비스계획 수립 ③ 서비스 계약 ④ 개입	① 교육 및 훈련 ② 상담 ③ 검사 및 측정 ④ Network 연결 ⑤ 서비스·정보제공	① 취업 전 프로그램 ② 취업 ③ 평가·모니터링 ④ 사후관리	(대상자) 서비스종료 (자활인프라) 성과급 지급, 재계약 혹은 계약종료

3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1 참여기관 모집

- (선정대상 및 시기) 광역단위별 희망리본 참여기관을 선정하되, 기존·신규참여지역 단계별 공모로 신규지역의 사업 여건 조성
 - 금년 7개 희망리본 참여지역(부산, 경기 등)은 '12.12월 전국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신규지역은 '13.1월 참여기관 공모·사업실시
- (모집기관) 지자체별로 희망리본 참여기관을 공모·심사·선정하되, 각 지자체는 사업·일정관리 등을 위해 중앙자활센터 위탁 가능
 - * 현장·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투명성·전문성·개방성 확보

2 선정기준

- (운영모델) 단일기관 참여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활사업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인정

[참여기관 운영모델(안)]

운영모델	유형	해당지역
단독법인형	단독 법인(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민간기업 등)	특별시·광역시
컨소시엄	광역+지역자활센터, 민간기업+광역(지역)자활센터 등	도 단위

- (복수참여 가능)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상인원 2천명 이상 지역 등은 복수기관 우선 선정 지역
- (법인 참여) 사업 책임확보를 위해 법인 참여 원칙,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전환시 사업 재참여 인센티브 제공
 - 부득이하게 법인 형태가 아닌 경우 지자체 직영 등 조건 제시

③ 선정 및 계약

- (선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43조

- (계약방식) 광역지자체 - 참여기관 계약 체결

- (지자체 - 참여기관) 희망리본 참여자·서비스 관리 계약
- (중앙자활센터 - 참여기관) 희망리본 성과관리·모니터링 계약

* 지자체 - 중앙자활센터는 참여기관 사업관리 위탁계약(보조금 집행)

[희망리본사업 계약 방식]



- (계약기간) 2+1년 계약, 일몰제 적용으로 참여기관 유효경쟁 유도

- (2+1년 계약) 참여자 지속적 사례관리, 참여기관 안정적 사업수행 등을 위해 최초 계약기간 2년, 사업평가를 통해 1년 계약갱신
- (일몰제 적용) 2+1년 계약종료 후에는 일몰제 적용으로 원점 (zero base)에서부터 참여기관 재공모·선정

* 기존 탈락 참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력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자에 대한 끊임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 제공

4 지원방식 효율화

① 참여기관 성과체계

- (성과모델) 전략적 행동(creaming & parking) 방지 및 취업난이도, 참여기관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가속모델(Target accelerator) 적용
 - (전략적 행동 방지) 취업률 수준에 따라 상이한 크기의 성과급 지급으로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략적 행동 방지
 - (취업난이도 고려) 우선 취업된 자는 취업난이도가 낮고, 나중에 취업된 자는 높다는 가정을 전제하여 프로파일링 대체효과 발휘
 - (참여기관 수용성) 사전 성과급 제시로 참여기관 불확실성 감소
- (기본·성과급 체계) 사업 연속참여에 따른 고정비용 비중 감소를 감안하여 연차별 기본급 조정 및 취업률 수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 (1차년도) 초년도 기본급은 12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고, 성과급은 취업률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사례관리자 1인 연간 40명 대상 서비스 제공시 기본급 48백만원 수입 확보, 성과급 최대 8,240만원(1단계 2,110만원, 2단계 3,330만원, 3단계 2,800만원) 추가로 확보 가능
 - (2·3차년도) 차년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급은 100만원 수준으로 조정, 성과급은 1차년도와 동일 지급
 - * 전년도 대상자의 성과는 당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에 한해 참여기관 성과급 지급 검토

[목표치 가속모델에 의한 참여기관 지원체계(안)]

1차년도 기본급	취업 성과급(1단계)		취업유지 성과급(2단계)		(수급자) 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모
	1개월		6개월		
120만원 * 2·3차년도 100만원	10 ≤ 취업률 < 20%	10만원	유지율 < 10%	30만원	70만원
	20 ≤ 취업률 < 30%	30만원	10 ≤ 유지율 < 20%	60만원	
	30 ≤ 취업률 < 40%	50만원	20 ≤ 유지율 < 30%	90만원	
	40 ≤ 취업률	70만원	30 ≤ 유지율	120만원	

② 참여자 지원체계

- **(실비지원)** 교통비, 식비, 복지서비스 연계 비용 등을 위해 참여자 1인당 참여기간동안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실비 지급
 - 참여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반영하여 참여자에 대한 실비 월별 분할지급 등 자체 실비지원 기준 마련
 - *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 이용 등에 따른 타 실비 지원이 있을 경우 미적용
- **(이행급여 지원)** 희망리본 참여자가 취업을 통해 탈수급하는 경우 한시적(2년간)으로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 특례 인정
 - * 희망리본 참여자가 탈수급한 경우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 지원 등 현물 위주의 탈수급 인센티브 제공 검토

5 관리·운영방식 효율화

- ① **(사업관리)** 참여기관 재무회계 투명성,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가칭) 희망리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행복e음과 연계한 재무회계·맞춤형 사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정기 평가·감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
 - * 위법·부정사례 발생시 계약 종료, 성과급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② **(사업운영)** 참여기관의 대상자 이력관리, 서비스 제공 표준화 등을 위해 희망리본 사업운영 매뉴얼 마련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
 - 각 지역별 희망리본 참여기관 명칭을 일원화(○○ 희망리본본부) 하고, 표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 개발
 - 지침해석, 사례공유, 위기관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참여기관 등이 참여하는 희망리본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IV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1 중앙희망리본본부 설치·운영

- (통합 성과관리) 신규 자활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중앙자활센터를 활용하여 중앙 단위 통합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중앙단위 수행기관) 희망리본 시범사업 기간 성과관리 모니터링 기관인 중앙자활센터 내 '(가칭)중앙희망리본본부' 설치·운영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공동운영 경비 활용
 - * 참여자 1인당 기본급(120만원)의 5% 수준에서 '중앙희망리본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경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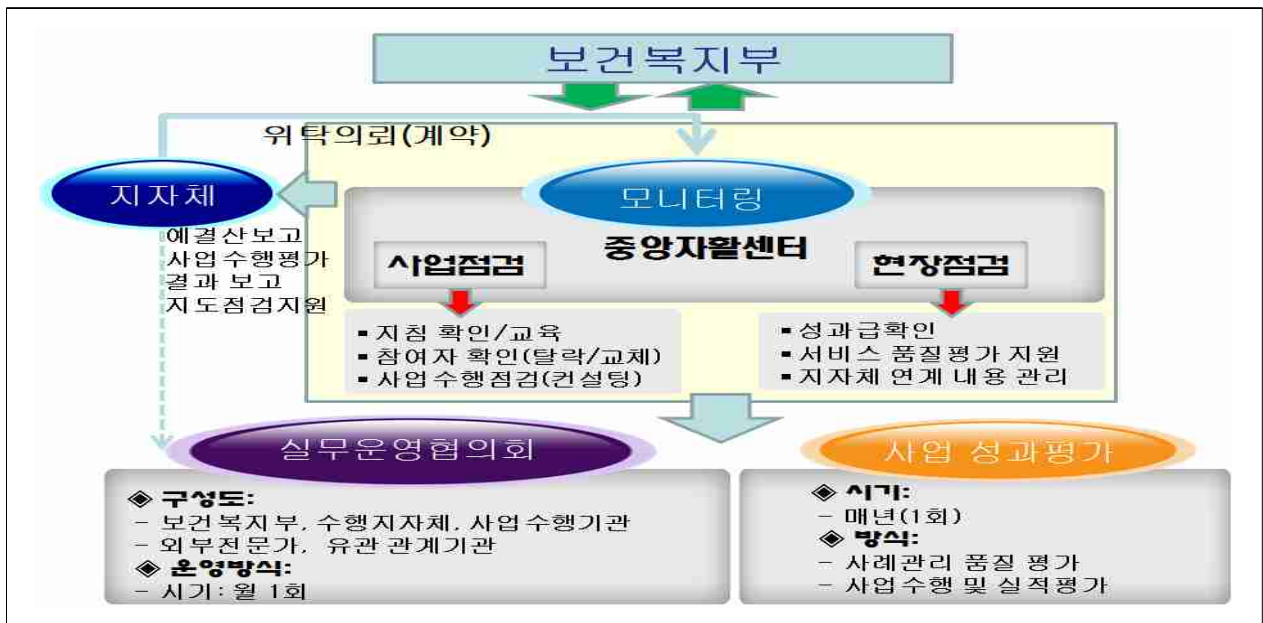
2 모니터링·평가 실시

- ① (모니터링) 참여기관 서비스 품질,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상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활용) '(가칭)희망리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품질관리조직) 참여기관 서비스 품질관리·유지 등을 위해 품질관리반, 수행점검반 등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② (사업평가) 참여기관 서비스 품질관리(사례관리), 사업관리 등 평가
 - (지역유형 감안) 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률, 자활사업 여건 등 각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인센티브 제공) 참여기관 연 단위 사업 평가, 인센티브 지급

③ (환류체계 구축) 지자체, 참여기관 등에 희망리본 모니터링·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하여 희망리본 사업 성과공유 체계 마련

-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 참여기관 - 중앙자활센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참여자 자립경로 지원, 참여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희망리본사업 효율화

[희망리본 모니터링·평가 체계(안)]



3 교육훈련 및 홍보·컨설팅 지원

① (교육훈련) '희망리본 모니터링시스템' 및 희망리본 최소 서비스 이행기준 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사업관리) 성과급 지급, 모니터링 체계 등 희망리본 사업지침, 매뉴얼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역량강화) 참여기관 종사자 능력배양, 제공서비스 전문성 제고, 사업수행 성과 공유 등을 통한 희망리본 사업 역량 강화

- ② (홍보·마케팅) 지역별 자율적 홍보를 통한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 전국 단위에서는 희망리본사업의 홍보 메시지 일관성(One-voice) 유지
- (BI 활용) 희망리본사업의 지역별 성과를 유도하고, 전국 단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희망리본 BI(Brand Identity) 개발·활용
 - (사례 전파) 희망리본 참여를 통한 자립성공 미담사례 발굴·전파
- ③ (컨설팅) 각 지역 참여기관의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우수사례 공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단위 품질관리 컨설팅 제공
- (수퍼비전 실시) 사례관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직원교육, 사례관리 내용, 사회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수퍼비전 실시
 - (제공서비스 평가) 참여기관 제공서비스 상대평가 등을 통해 우수기관 표창, 하위기관 별도 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 실시

V

추진계획 · 일정

① 희망리본 전국사업화 준비

- 2013년 희망리본 전국사업 지침(안) 의견수렴 및 마련('12.12.20.)
- 희망리본 전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지침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12.21)
- 기존 참여지역 단계별 참여기관 선정 · 교육 실시('12.12월~1월 2주)
- 신규 참여지역 단계별 참여기관 선정 · 교육 실시('13.1월 3주~ 4주)

② 희망리본 전국 사업 실시

- 희망리본 대상자 모집 · 지원('13.1월~)

[희망리본 전국사업 추진일정(안)]

구분	'12.12월	'13.1월	2월	3월
----	---------	--------	----	----

① 전국사업 준비

희망리본 사업지침 마련																				
희망리본 지자체 교육																				
기존 참여지역	수행기관 공모																			
	계약체결																			
	지침교육																			
신규 참여지역	수행기관 공모																			
	계약체결																			
	지침교육																			

② 대상자 모집

기존 참여지역 (경기, 부산, 인천, 전북, 강원, 대구, 광주)																				
신규 참여지역(7개 지역 이외)																				